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8.1.17(수) 17:00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문석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엄재창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8년 1월 12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1월 12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가 기존에 사용하는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도내 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나.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5조)
- 다.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 LED의 공공부문 보급 확대 (안 제6조)
- 라. LED조명의 민간부문 보급 촉진(안 제7조)
- 마. 도지사의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 우선 사용 권장 (안 제8조)
- 바. LED조명 보급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조명을 발광다이오드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도내 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적절함.